##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5 발의연월일: 2020. 9. 23.

발 의 자: 우원식·김남국·김민석

김승원 • 남인순 • 박성준

소병훈・양정숙・오기형

오영환 · 용혜인 · 윤건영

유미향 • 이수진॥ • 이용빈

이학영 · 인재근 · 전혜숙

정춘숙 · 정필모 · 양이원영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Know-how) 등을 이용하여 가맹점주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 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too) 사업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 제공 없이 영세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해당 브랜드의 성공적인 출점 현황 등만 소개되고 있어 실제

출점과 폐점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고, 현재 출점 및 폐점 현황을 제공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 본래의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제2조제10호아목, 제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 법률 제 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 및 점포 출·폐점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2개 미만이고 그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공개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	10
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	
한다.	<b>.</b>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아. 가맹본부의 직영점 및 점</u>
	포 출·폐점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
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 등) ①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	
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2개 미만이고 그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